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3,324,989	11,199,750
일반회계	350,608,003	10,518,240
특별회계	22,716,986	681,510
기타특별회계	22,716,986	681,51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47,530	121,42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39,301	22,179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7,414,466	222,434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739,981	22,199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96,959	23,909
수질개선 특별회계	5,545,339	166,360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3,210,000	96,300
기반시설 특별회계	223,410	6,70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91,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